

# 의성문화원 정관

현 행

정 관

제 개 개 개 개 개 개	정 정 정 정 정 정	1984. 2010. 2013. 2014. 2017. 2018.	8. 3. 3. 3. 7. 02.	17. 17. 25. 14. 23. 24.
---------------	-------------	----------------------------------------------------	-----------------------------------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의성문화원(이하 “본원”이라한다)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원의 사무소는 의성군청 소재지에 둔다.

제3조(목적) 본원은 지역문화의 계발 연구 조사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원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7. 지역문화의 창달을위한 사업
8. 지역환경보존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9.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5조(수익사업) 본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이익의 제공)①본원의 목적사업 수행에 따라 본원의 시설 이용 또는 프로그램의 참여, 기타 목적사업의 수행결과로 파생되는 이익은 회원 또는 일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본 원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할 경우가 아니면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을 두지 못한다.

제2장 회 원

제7조(구분 및 입회절차)①본 원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②일반회원은 의성군에 거주하고 본원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문화원장(이하“원장”이라한다) 앞으로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③특별회원은 거주지역을 불문하고 본원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이사회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현 행

**제8조(회원의 권리)** 회원(일반회원과 특별회원, 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총회를 통하여 본원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9조(의무)**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본원의 정관 및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준수
3. 연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4. 연 회비 및 부담금 납부는 당해연도 6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0조(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회원은 원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할 경우와 전년도 회비를 당해연도 총회까지 미납한 경우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제11조(회원의 상벌)** ①본원의 회원으로서 본원의 발전에 기여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본원의 회원으로서 본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할 수 있다.

③회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바와 같다.

1. 제명:회원자격을 박탈한다.
2. 자격정지:3월이상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회원자격을 정지하며, 자격정지 기간은 이사회 의결에 의한다.
- ④전항의 징계를 위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3장 임원

**제12조(임원)** 본원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원장 1인
2. 부원장 3인 이내
3. 이사 30인 이내(원장, 부원장 포함)
4. 감사 2인

**제13조(임원의 선임)** ①원장을 포함한 임원은 회원 중 총회에서 선임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장의 지명에 의해 일부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②임원은 임기만료 1개월 이전에 선출하되, 새로운 임원의 선출에도 불구하고 종전 임원의 잔여임기는 보장된다.

③임원이 임기 중 권위된 때에는 권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원장은 회원 또는 외부인사 중 학식과 덕망 및 도덕성을 갖추고 지방문화원 중흥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를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내 범위 내에서 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원장에 의해 지명된 임원은 본인 동의 및 이사회 인준을 거쳐 본원의 임원으로 선임한다.

⑤원장선거는 의성문화원장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선임한다.

단,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자로 추대할 수 있다.

**제14조(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이사 4년, 감사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선임제한)** ①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 현 행

②이사와 감사는 겸직할 수 없으며 상호간에 제1항에 규정된 관계가 없는 자로 한다.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1.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5.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한 자

**제16조(정치관여 등의 금지)** 본원은 정치·종교 활동에 관여해서는 아니 되며, 원장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정당의 간부를 겸직할 수 없다.

**제17조(임원의 사퇴)** ①임원은 원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임원 자격이 상실된다.

②제1항의 경우 임원직만 상실되고 회원으로서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③임원이 정관 제9조 제3호를 이행치 않을 때는 당해연도 말일 날 자진사퇴한 것으로 한다.

④원장이 재임 중 업무와 관련되어 형사소추가 되었을 때는 직무가 정지되며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형이 확정될 경우 원장직을 상실한다.

**제18조(임원의 직무)** ①원장은 본원을 대표하고 본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②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의 유고 및 궐위시 그 직무를 대행하되 부원장도 유고시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원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④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원의 재무상태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나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도지사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원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원장에게 또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9조(운영위원 등)** ①본원의 발전을 위하여 운영위원, 고문 및 자문위원 등을 둘 수 있다.

②운영위원, 고문 및 자문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원장이 추대한다.

③문화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지부를 둘 수 있다.

④문화원의 발전을 위하여 예술단체를 둔다.

제4장 총 회

제20조(구성)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구분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말일로부터 3월 이내에 개최한다.

③임시총회는 필요할 경우 원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22조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④총회의 소집은 원장이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14일전까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소집이 지연되어 의안이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할 경우에는 소집통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제4항 단서는 임원 선임을 위한 총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소집특례) ①원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요구한 때.
2. 재적 회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 요구한 경우.
3. 제18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

②전항의 총회 소집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원장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회원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23조(의결 정족수) ①총회는 재적 회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제1항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회의 개시 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본원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타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5조(총회 의결 제척사유) 일반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본원과 이해가 상반되는 자에 관한사항.

제5장 이사회

제26조(구성) 이사회는 원장과 부원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7조(소집) ①이사회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원장이 소집한다.

②이사회 소집은 원장이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5일전까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소집특례)①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요구한 때;
2. 제18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감사가 소집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29조(의결 정족수)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제1항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0조(이사회 기능) 이사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총회의 부의할 안건의 작성
9.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10. 기타 중요사항

제31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본원과 이해가 상반되는 자에 관한 사항.

제6장 재정(재산과 회계)

제32조(재산의 구분) ①본원의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 한다.  
1. 기본재산은 본원 설립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본원의 기본재산은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기본재산의 처분) 본원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시·도 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수입금) 본원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 찬조금, 보조금,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

제35조(회계연도) 본원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6조(예산편성) 본원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7조(차입금) 본원이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계속비) 본원은 매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39조(결산) 본원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결산 임여금) 세입·세출 결산임여금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월금 또는 신규사업 수행에 필요한 준비금으로 처리한다.

제41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실시한다. 단,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감사를 할 수 있다.

제42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경우에 따라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7장 사무국

제43조(설치) 원장의 지시를 받아 본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44조(구성등)①사무국에는 국장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은 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직원의 임무와 보수에 관한 사항및 인사, 채용, 정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현 행

### 제8장 보 칙

**제45조(본원해산)**①본원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본원이 해산한 때의 잔여 재산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구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원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6조(정관변경)** 본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47조(실적보고)** 본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
2.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3. 당해 사업연도말의 재산목록 및 회원현황
4. 감사의 결과보고서

**제48조(규칙 제정)** 본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문화원 설립인가를 받아 법인설립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자 서명)** 위와 같이 문화원의 정관을 작성하고 서명한다.

### 부 칙(2010. 3. 17)

①(시행일) 2010. 3. 17. 정기총회에서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3. 3. 20)

①(시행일) 2013년 3월 20일 정기총회에서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4. 3. 14)

①(시행일) 2014년 3월 14일 정기총회에서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7. 2. 23)

①(시행일) 2017년 2월 23일 정기총회에서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8. 2. 24)

①(시행일) 2018년 2월 24일 정기총회에서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